#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9. 8. 28.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**1. 제 출 자**: 성동구청장

### 2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내 명칭 일부 변경과 관내 성동소방서의 신설 및 구 행정 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# 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(안 제3조제3항)
  - 국가정보원 조정관 →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
  -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→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
  - 성동구 지역 소방서장 → 성동소방서장
  -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→ 서울교통공사 사장
- 나. 성동소방서의 신설과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 정비 (안 별표 1, 별표 2)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,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#### 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9. 4. 18. ~ 5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대상 아님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, 관내 유관기관 신설 및 구 행정기구 개편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며, 아울리 향후 협의회 위원 구성 등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적기에 조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